

공고

기안용지

중소기업계

권장규정 3 조 항
제 1 부 서 장

| | | | |
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분류기호 문서번호 | 공민 1000 970 | (전화번호 75 - 7649) | 제 1 부 서 장 |
| 처리기관 | | | |
| 시행일자 | | | |
| 보존년한 | | | |
| 보 조 기 관 | 산업국장 | <i>[Handwritten Signature]</i> | 제 1 부 서 장 <i>[Handwritten Signature]</i> |
| | 공업국장 | | |
| | 중소기업계장 | | |
| | | | |
| 기안책임자 | 반상근 | 72.10.10 | 조 |
| 경유 수신 참조 | 기안참조 | 발신 | <i>[Circular Stamp]</i> |
| 제목 | 서울특별시 시업의 기공사업등조합 임원 취임 영령 | | |
| 제 1안) 내부결재 | | | |
| 당서가 설립인가한 (66.10.8) 외 조합은 중소기업업등조합 | | | |
| 사업자금을 부담 관용하고, 조합회계를 부실하게 집행 하였다는 이유로 | | | |
| 시정당국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어 (법집 과사 참조), 중소기업업등 | | | |
| 조합법 제 100 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공임원을 선임케 위하여 | | | |
| 법안 시행요청 합니다. | | | |
| 제 2안) | | | |

정서
[Circular Stamp]
관인
발송
[Circular Stamp]

0201 1-8A

1969. 11. 10. 승인

190mm×268mm 백상지40g/㎡

119

2/3
수 1

등

수신 서울특별시 서문-가공업 협동조합 이사장 ~~장영하~~ ~~장영하~~ ()

제목 동 건

1. 귀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~~법~~ 임직임을 부담 운영하고 조합규칙
를 부실하게 집행 하였다는 혐의로 72.10.10 ~~년~~ 제 1회 정기 ~~대~~ ~~의~~ ~~회~~ ~~로~~ ~~부~~ ~~의~~ ~~수~~ ~~사~~ ~~를~~
받고 있어,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00 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임원
의 책임을 명하니

2. 72.10.31 까지 ~~법~~ ~~령~~ ~~명~~ ~~령~~ ~~서~~ ~~에~~ ~~서~~ ~~명~~ ~~시~~ ~~한~~ ~~관~~ ~~계~~ ~~임~~ ~~원~~ ~~을~~ ~~추~~ ~~진~~ ~~하~~
~~다~~ ~~고~~ ~~중~~ ~~소~~ ~~기~~ ~~업~~ ~~협~~ ~~동~~ ~~조~~ ~~합~~ ~~법~~ ~~의~~ ~~귀~~ ~~조~~ ~~합~~ ~~정~~ ~~관~~ ~~의~~ ~~경~~ ~~하~~ ~~는~~ ~~바~~ ~~에~~ ~~따~~ ~~라~~ ~~임~~ ~~원~~ ~~을~~ ~~보~~ ~~선~~
하고 결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만일 위 기간 내에 관계 ~~임원~~ ~~을~~ ~~보~~ ~~선~~ 임원을 보선, 조합을 강
상화 하지 않을 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00 조 제2항의 규정에 ~~바~~ ~~에~~ ~~따~~
라 조합을 해산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.

첨부 : 임원 퇴임 명령서 1부. 끝.



제 3 안) 임원책임 명령서(안)

임원 책임 명령서

조합명 : 서울특별시 서민트가공업협동조합

주소 : 서울특별시 중도구 보동 203 - 1

1. 상기 조합 ~~의~~ 임원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00 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72.10. .주 책임을 명한다.

(사법사건제)

가. 책임임원

이사장 김경배

상부 이사 이택중

감 사 김재섭

" 이문순

| | | |
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
| 공고안심사 | 1972. 10. 14 | 제 240 호 |
| 심 자 자 | 법제계장 | 법무과장 |
| | 홍 | 홍 |

72. 10. 14. 홍

서울특별시장

제 4 안)공고안

서울특별시공고전 호

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공고안심사 | 1972. 10. 13 | 제 240 호 |
| 심 자 자 | 법제계장 | 법무과장 |
| 홍 | 홍 | 홍 |

서울특별시 서민트가공업협동조합 임원 책임 ~~명령서~~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00 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~~조합의~~ ~~이대~~

의원을 책임 조처 하여 ~~고~~ 합니다.

1972. 10. .

서울특별시장

1. 조합명 : 서울특별시 서면그 기공업협동조합

2. 주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로동 203 - 1

3. 책임인원 : 이사장 김경백

상무이사 이태중

감사 김계섭

" 이문순

4. 책임일자 : 72. 10.

(8224월시거래)

5. 책임사유 :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자금 부당 운용

제 5 안

수신 상공부장관

참조 기업과장

제목 등 권

1. 66.10.8 당사가 설립인가 한바 있는 다음 조합의 다음 인원을 책임 조처 하였기 보고 합니다.

가. 조합명

나. 주소

다. 책임인원

라. 책임일자

"제4 공고안 이기 시행"

마. 책임사유 :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자금을 부당 운용

하고 조합회계를 부실하게 집행하였다는 혐의로 72.10.10 현재 사정 당

국으로 부속 수사를 받고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00 조 제2항의

규정에 의한 것임.

제 6안)

수신 수신처 참조

제목 공고문 송부

당시 공고 제 호를 송부 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게 바랍니다.
(시행시 기재)

첨부 : 공고문 사본 1부. 끝.

수신처 : 서경 1-9. 중소기업은행장. 중소기업연동조합 중앙회장.

13개 연동조합 이사장.

제 7안)

수신 공보실장

발신 공업과장

제목 서보 게재외국

당시 공고 제 호를 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시행시 기재)

첨부 : 공고문 사본 1부. 끝.

8-5

서울특별시

2. 근위 2.1.31 가제 안전시정조치에 앞을서는 7월법 제 100조

제 2항의 규정이 의하여 조항을 폐산조치 할것임을 언급 경고 합니다.

(단, 기계공업연동조합은 위 기간이 구외되지 않음)

첨부 : 상공부 장관 공한 사본 1부. 끝.

수신처 : 시멘트공업연동조합

72.10.5. 東亞日報



8-1

28

서울특별시

중기입형등 조합법

제10조 ① 주무관청으로 조합, 연합회 또는 중앙회기 다음
각회의 1에 해당된다면 인정할 때에는 인정한 기간을
정하여 공무의시정 기간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

1. 감독나 회계나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위반한 때

2. 운영이 현저하게 불량한 때

3. 생략

② 주무관청으로 조합, 연합회 또는 중앙회기 조합의명령
에 위반한 때에는 인원의 해임 또는 그의 해산을명할
수 있다

제15조 (인원의 임기) ① 인원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그 기간
은 2년 이내로 한다

② 임원에 결원이 있을 때에는 결원의 사유가 발생
날로부터 2월내에 보임하여야 한다

8-8

299